하나손해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약관

2021.01

법률비용보상보험 목차

▫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9 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제 10 조 (보험금의 분담)
제 11 조 (손해방지의무)
제 12 조 (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5 조 (양도)
제 16 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18 조 (청약의 철회)
제 19 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0 조 (계약의 무효)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2 조 (조사)
제 23 조 (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5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 (계약의 해지)
제 3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3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2 조 (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 (분쟁의 조정)
제 34 조 (관할법원)
제 35 조 (소멸시효)
제 36 조 (약관의 해석)

제 37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 38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39 조 (개인정보보호)
제 40 조 (준거법)
제 41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 별 약 관

1. 업무상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2. 업무상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3. 업무상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Ⅱ
4. 업무상 형사사건(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4-1. 업무상 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추가보상 추가특별약관
5. 업무상 형사사건(피고인)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6. 교원소청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7.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벌금 특별약관
8. 교권침해피해 특별약관
9. 단체계약 특별약관
9-1.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9-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0.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10-1.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10-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1. 공동인수 특별약관
12.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13. 손해처리 협조 특별약관
1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별표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별표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별표3]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법률비용보상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약관상 부담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건이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

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법원 심리의 결과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의 흠결 등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있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에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소송판결
【소장각하명령】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6. 특허법에 정한 특허권,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제 70조(단체소송의 대상)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제기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전부 패소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제 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 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8 조 (보험금 등 지급 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총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지급하는 총 보상액은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9 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2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양도)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 감독 규정 제 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 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5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 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6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7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38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법률비용보험 특별약관

1. 업무상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발생한 법적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로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

우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9.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 이라고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1. 「소비자기본법」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2.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과태료 등 소송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
1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5.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6.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7.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
18. 피보험자 상호간 또는 피보험자와 소속단체간의 민사소송
19.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업무에(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일체의 소송
20. 「민사소송법」에 따른 조정 신청사건이나 제소 전 화해 등 소송에 의하지 않은 조정이나 화해
21.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나 재심
22. 소송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상대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제 3 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별표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별표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각 호에 대한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1심, 2심, 3심을 포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업무상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발생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주] 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합니다)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9.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 이라고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1. 「소비자기본법」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2.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과태료 등 소송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
1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5.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6.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7.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18.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제기하는 소송
19.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업무에(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일체의 소송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익 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 등을 말합니다)
21.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22. 소송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상대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제 3 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별표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별표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각 호에 대한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1심, 2심, 3심을 포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업무상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Ⅱ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의 판결이 피보험자의 일부승소 또는 전부승소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1심결과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의 종국결과가 일부승소 또는 전부승소인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발생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주] 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종국판결】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합니다)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9.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 이라고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1. 「소비자기본법」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2.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과태료 등 소송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
1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5.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6.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7.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당선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18.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제기하는 소송
19.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업무에(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일체의 소송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익 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 등을 말합니다)
21.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22. 소송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제 3 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별표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별표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각 호에 대한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1심, 2심, 3심을 포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업무상 형사사건(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인하여 피의자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검찰청에 수리될 때, 피보험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사건의 수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제57조(결정)에서 정하는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민이 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 중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사건 수리일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검찰사건사무규칙」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 등)에 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수리일자를 말합니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피의사실이 다수여서 분리 결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산출한 보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전체 피의사실 결정 건수에 대한 불기소결정 중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으로 처리된 결정 건수의 비율을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상책임액 (제①항에서 산출한 금액)} \times \frac{\text{불기소결정("혐의 없음","죄가 안됨")처리된 결정 건수}}{\text{전체 피의사실 결정 건수}}$$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 다시 피보험자가 수사를 받게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 업무상 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추가보상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 특별약관은 업무상 형사사건(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조(적용범위)의 사건으로 아래 심급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형사사건(피의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형사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형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형사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1심 단독사건	고단
항소심	형사항소사건	노
상고심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업무상 형사사건(피고인)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인하여 아래에서 정한 형사소송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아래 심급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때, 회사는 피보험자가 각 심급에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형사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형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형사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1심 단독사건	고단
항소심	형사항소사건	노
상고심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대상 심급의 1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1심 소송의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변호사선임비용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산출한 보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가 공소제기된 전체 죄(罪)의 건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죄(罪)의 건수의 비율을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상책임액 (제①항 내지 ④항에서 산출된 금액)} \times \frac{\text{불기소결정("혐의 없음","죄가 안됨")처리된 결정 건수}}{\text{전체 피의사실 결정 건수}}$$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이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심신장애인)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교원소청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소청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인용(처분의 취소·변경), 기각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용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와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교원소청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조 (교원소청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교원소청" 이라 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의 소청을 말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지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교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

1. 「유아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3.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③ 조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허위진술 또는 허위증거 제출 행위포함)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정한 청구의 취하, 청구의 각하

【청구의 취하】"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에서 정한 것으로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각하】"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6.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 선임비용
7.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사건(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기인한 소청
8. 보험기간 이전에 교원소청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9. 소송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상대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경정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을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급 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6 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의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피보험자의 소청 청구내용, 변호사 선임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 포함)
2. 변호사를 선임한 소청에 대해 심사 결정 전 청구의 각하, 청구의 취하 등이 발생한 경우
3. 변호사를 선임한 소청에 대해 심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청심사 청구서, 결정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벌금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단,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로 인한 확정판결에 한합니다) 되었을 때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와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7. 피보험자의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인한 치상이 원인이 되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라 확정 판결된 벌금

제 4 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 판결문 등)
4. 기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교권침해피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서 심의 처리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처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권침해 피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교권침해 피해 보험금은 1사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각 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2개 이상 발생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교권침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1사고로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교권침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 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다시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경우라도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아 보험금을 1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지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합니다.

②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및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제1항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판단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상법 제735조의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자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 (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적용상의 특징)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1.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2. 단체계약 보험기간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 조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 약관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1.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약기간동안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 3 조 (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회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정산기간이 1개월이며 최초1회의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조 (보험료 정산방법)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5 조 (회사의 보험개시)

보험료정산추가특약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 시에는 아래 각 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12.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손해처리 협조 특별약관

이 증권상의 배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재보험상의 다른 배상책임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원수보험자는 배상청구와 그러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사정과 정산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도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1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냅니다.

제2조(분할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체결일 (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2회: 체결일 후 5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체결일 (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2회: 체결일 후 2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3회: 체결일 후 5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4회: 체결일 후 8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체결일 (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체결일 (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 제2항의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200만원+(소송목적의 값-2,000만원)X(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440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X(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7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X(4/100)]	4%
1억5천만원으로 초과하여 2억원까지 [9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X(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2억원)X(1/100)	1%
5억원 초과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5억원)X(0.5/100)(단 1,500만원 한도)	0.5%

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별표 2] 「민사소송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원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0%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주) 「민사소송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별표 3]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심급		송달료
민사소송	1심	민사소액	96,000원
		민사단독	144,000원
		민사합의	144,000원
	항소심		115,200원
	상고심		76,800원
행정소송	1심		96,000원
	항소심		96,000원
	상고심		76,800원

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